

국문논총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4. 3. 15

개정 2012. 3. 12

개정 2016. 3. 21

개정 2017. 8. 1

개정 2021. 1. 18

전부개정 2021. 4. 26

개정 2023. 2. 13

제1장 총칙

제1조(발간목적)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성과의 공유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학술지 「통일정책연구」를 발간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심의 및 구성) ① 「통일정책연구」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집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획특집 주제의 설정 및 집필자 위촉에 관한 사항
3. 투고논문의 심사위촉, 심사 결과 확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3. 2. 13)
4. 서평 및 부록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출판 및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2. 13)
 6. 기타 「통일정책연구」 발간과 관련된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회의 편집위원 및 위원장은 공모를 통하여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3. 2. 13)
 - 1) 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종료 15일 전까지 해당 필요 인원의 공모를 요청한다.
 - 2) 공모에 응모한 사람에 대해서 원장이 편집위원 및 위원장을 최종결정한다.
 - 3) 원장 승인 일로부터 편집위원 및 위원장은 임기를 시작한다.
 3. 원내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및 위원장 임기 종료 및 결원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3. 2. 13)
 5. 원외 편집위원은 원내 편집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책임자를 선정, 위원장이 원장에게 추천하여 최종결정하도록 하며 원외 편집위원의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고려한다.
 - 1) 사회과학 전공의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 2) 북한문제·통일정책 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 3) 기타 편집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① 정기회의는 4월, 5월, 10월, 11월 등 연 4회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을 포함한다)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장 발간

제4조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 「통일정책연구」의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2. 편집인: 편집위원회 위원장
3. 편집위원: 편집위원회 위원

제5조 (구성) 「통일정책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일반 논문(자유 주제를 통해서 공모한 논문) (개정 2023. 2. 13)
2. 기획 논문(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기획특집'이 게재될 경우에 한함)
3. 서평
4. 부록

제5조의 2(편집절차) 기획논문, 서평, 부록의 편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논문'의 편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에서 기획논문의 주제 선정
 2. 집필자 공모 및 집필 의뢰(집필자를 공모를 통하여 결정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특정인에게 논문작성을 의뢰)
 3. 필요시 집필자 회의
 4. '기획논문'의 수정: 공모를 통해서 투고된 논문은 공모논문의 심사절차를 따르며, 의뢰된 기획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서평'의 편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평 대상 저작(들) 공모
 2. 편집위원회가 서평의 주제 선정
 3. 서평 집필자 결정
- ③ 부록 '부록'의 편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가 부록 자료를 선정
 2. 외국어 자료의 경우는 번역

제6조 (발간 언어) 「통일정책연구」의 발간 언어는 국문으로 한다.

제7조 (발간 횟수 및 발간 예정일) 「통일정책연구」의 발간 횟수 및 발간 예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 횟수는 연 2회를 최소기준으로 하고 연 4회를 목표로 한다.

2. 발간 예정일은 연 2회 발간 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원고료 지급) ① 외부 저자가 투고한 논문이 게재확정 되었을 때는 연구원이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는 논문은 제외한다. ② 원고료 지급 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며, 계약서 작성은 별첨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계획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3.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게재 예정 증명서)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결정된 투고 논문에 대해 출판 전 필자의 요구에 의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투고

제11조(논문의 작성 및 제출) ① 논문은 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단,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논문의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으며, 모든 논문은 제6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고 논문의 접수) ① 통일정책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JAMS(kinu.jams.or.kr)를 통해 투고한다.

② 통일정책연구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연 2회 발간 시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 1호 4월 30일
- 2호 10월 30일

④ 논문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작성하며, 국·영문 초록의 경우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작성한다.

제13조(저작권) ① 「통일정책연구」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② 저작권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계약서(별첨1호)를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심사

제14조(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원고 송부) ①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표절점검시스템 검사를 거친 뒤 접수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접수 논문을 예비 심사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③ 예비 심사를 통과한 접수 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자 3인에게 의뢰한다.

④ 공모 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자 수, 심사방법, 심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원내·외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재직 중인 심사자는 선정하지 않는다.
2.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은 임기 동안 단독 혹은 공동으로 「통일정책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3. 논문심사는 3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2. 13)
4.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 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5. 공모논문의 심사는 논문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논문 심사기준) ① 공모 논문의 심사 및 평가 기준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비중 12%)
2. 논문의 창의성(비중 24%)
3. 최근의 연구동향 반영 정도(비중 12%)
4. 학문적 기여와 정책적 유용성(비중 28%)
5. 연구·분석 방법의 적합성(비중 12%)
6. 자료수집 및 활용의 충실성(비중 12%)

② 공모 논문의 심사 판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

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 심사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1. 80점 이상인 경우: '게재 가'
2. 6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게재'
3. 50점 이상~65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재심'
4. 50점 미만인 경우: '게재 불가'

③ 초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16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논문심사 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 가'일 경우 논문심사 결과(3인의 논문 심사 의견서 첨부)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출판한다.
2. 논문의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일 경우 논문심사 결과(3인의 논문심사 의견서 첨부)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원고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출판한다.
3. 논문의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일 경우 논문심사 결과(3인의 논문심사 의견서 첨부)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을 마친 논문을 재심사한다. 이때 재심위원은 2인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심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3. 2.)
4.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일 경우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인의 논문 심사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17조(심사비)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와 재심 신청) 논문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5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심 수용 심사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윤리

제19조(목적) 본 장은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윤리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기준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적용 대상) 이 장은 「통일정책연구」에 논문의 게재를 원하는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윤리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본 장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기·중복게재 등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나. 설문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다.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라.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가. 수집한 원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나.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 다.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 라. 사진 자료 등에서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삭제하는 것
 - 마. 선택적으로 자료를 선별하는 것
3. 표절: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가.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다.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라.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마.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4. 중복게재(자기표절):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 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나.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다.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5.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 가.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22조(연구윤리기준) ①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자는 제21조에서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통일

정책연구」의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의 학술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의 기본의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차별금지) 편집위원회는 「통일정책연구」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심사의뢰
 -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나. 편집위원회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의뢰 시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만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한 심사
 - 가.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은 전공불일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투고자에 대한 존중

가.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투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연구윤리 준수 확인) 「통일정책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는 게재자는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첨2호) 및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별첨3호)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13)

제24조(인간 대상 연구) ① 인간 대상 연구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로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통일정책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이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증명서(또는 심의면제증명서) 또는 자가심의면제사유서(자유양식)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인간 대상 연구라고 판정하는 경우 ②항의 증명서 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특수관계인) ①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첨4호의 양식을 따른다.(개정 2023. 2. 13)

제26조(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①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

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27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기) ① 「통일정책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격에 제한 없이 본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원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 및 본지의 발행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 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①항에 대한 검토 후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보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내에 학술지 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윤리소위원회 구성) ① 윤리소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윤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토록 한다.

③ 윤리소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2. 13)

제30조(투고자 등의 협조 의무) 연구윤리기준의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등은 윤리소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자 등이 윤리소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로 연구윤리지침에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소위원회는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무혐의에 대한 사후조치) 조사·심의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 윤리소위원회는 의혹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편집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즉각 수용, 실행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윤리소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의혹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4조(제재조치) 제21조의 범위에 해당되어 윤리소위원회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전면 개정 2023. 2. 13)

- 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최소 3년 이상 단독 혹은 공동으로 「통일정책연구」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다만, 투고 불허기간은 윤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 발행기관, 학술지 홈페이지, 타 웹사이트 등의 해당 논문 페이지에 철회 사실 및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한다.
- ③ 윤리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판정 직후 발행되는 학술지 권·호에 철회 사실 및 사유, 조치사항 등을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제3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 및 당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부서에 논문 철회 사실 및 사유, 조치사항 등을 통보한다.
- ⑥ 원고료를 전체 혹은 부분 환수하고 인트라넷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제35조 (상위 규정 적용)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연구윤리의 내용과 한국연구재단 지침이 상충 될 경우 한국연구재단 지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2. 13)

부 칙 (2004. 3. 1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3. 1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6. 3. 2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18)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심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별첨1호)

기획논문(원고) 작성 계약서

1. 사 업 명:
2. 사업책임자: ()
3. 계약 금액: ₩ (금 원정)
4.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계약당사자: (갑)통일연구원장
(을)

위 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결한다.

제1조(사업내용) 을이 수행할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문논총 기획논문(원고): 제목 기재]

제2조(수행의 범위) 을은 본 사업의 연구원의 발주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액) ①을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이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해당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지급할 대금 또는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 항에서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원고 제출) ①을은 년 월 일 까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고 제출시에는 (한글·영문) 요약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검수) ①을은 “국문논총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하여 갑이 지정한 심사자에게 원고를 심사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심사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②을은 원고 내용이 제1조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 지급)** 제5조의 원고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며, 심사결과 '계재 불가'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계약변경)**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2조에 의한 사업범위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 제8조(지체상금)** ①을이 지정 기간내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갑은 제6조에 의하여 지급될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 등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서면으로 요청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계약의 해제)** ①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내에 사업을 완수할 가망이 없을 때
 3.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을의 사업수행에 있어 소정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사업결과의 내용이 부실하여 사실상 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을은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수령한 사업비를 갑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8조②항에 의하지 않고 지체일수가 1개월을 초과한 경우와 ①항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을은 향후 5년간 갑이 추진하는 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 을이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을은 서면으로 요청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보안)** 을은 본 사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결과물의 저작권)** ①당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갑에 귀속한다.
 ②을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을은 연구결과를 갑의 승인 없이 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 제13조(결과물의 저작권 확인 및 보증)**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결과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과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14조 (소유권 및 판권) 을이 제출한 원고 및 결과물 일체의 소유권 및 판권은 갑에게 소속되며 동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협조) 을은 본 사업수행 중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석 및 분쟁 해결) ①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재판에 의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하며,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로 한다.

본 계약체결 증명을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통일연구원
원 장

(인)

(을) 성 명
주소
주민번호

(인)

(별첨2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에 원고를 게재함에 있어 국문논총위원회 운영규칙의 연구윤리 조항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통일연구원에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통일연구원장 귀하

(별첨3호)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논문명		점검일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참여구분		
구분	연 번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	
			있음	없음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경우		
변조	2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표절	3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4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5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6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2차문헌 표절)		
	7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8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9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중복 게재	10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11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12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	13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기준(실질적 지적 기여, 책임 협의)을 충족하지 않고 부당하게 저자를 표기한 경우		
기타	14	각주(내용주, 미주 포함) 등과 참고문헌 서지사항이 불일치한 경우		
	15	부정확한 서지사항(저자, 제목, 년도 등)을 기재한 경우		
	16	출처표기 인용 원문의 내용과 대상 원문의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17	표, 그림, 사진 등을 인용했음에도 연구자가 재가공한 것처럼 표기한 경우		

본인은 본 과제의 연구윤리 자가점검 상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연구윤리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성 명: (인)

(별첨4호)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제출 양식

논문 개요

논문 제목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 (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자 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 계인				

※ 주의사항 :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저자 간 합의 사항>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구분	연구기 획	연구수 행	원고초 안 작성	최종원 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저자 B	()%	()%	()%	()%	()%	
특수관 계인	()%	()%	()%	()%()%	()%	
계	30%(*)	40%(*)	20%(*)	10%(*)	100%(*)	

□ 연구윤리 확인내용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 이 양식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20.4.10.개정판)'내 '붙임6.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예시)'를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